감 정 평 가 서

의 뢰 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익환
건 명	김동규 소유물건(2024타경7488)
감정서번호	IW241115-5084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우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55-312-5762 FAX. 0505-182-4762

(부동산)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신 동 훈

감정평가액	일십일억오천팔백오십만팔천원정(₩1,158,508,000.-)			
의 뢰 인	창원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권익환	감정평가 목 적	법원경매	
제 출 처	창원지방법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 유 자 (대상업체명)	김동규 (2024타경7488)	감정평가 조 건	-	
목록표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기 타 참고사항	-	2024.11.23	2024.11.22 ~ 2024.11.23	2024.11.25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토지	7,247 이	토지	7,247 하 여	- 백	1,158,508,000
	합 계					₩1,158,50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목적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소재 "독산마을회관" 동측 인근[기호1,2)] 및 남서측 인근 [기호 3)에 각각 위치하는 토지로서 창원지방법원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 건임.

2.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음.

3. 감정평가조건

없음.

4. 실지조사기간 및 기준시점

가. 실지조사기간

본건 실지조사기간은 2024년 11월 22일~2024년 11월 23일임.

나. 기준시점

본건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자인 2024년 11월 23일로 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감정평가의 근거 및 방법 적용

가.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감정평가 실무기준』등 감정평가 관련 법규, 감정평가의 일반이론 등에 따라 감정평가 하였음.

나.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가) 부동산 및 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방식(방법)에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원가법 및 적산법 등),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등), '수익성'에 기초한 수익방식(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나) 원가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라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원가법', 대상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사용료를 포함)를 산정하는 '적산법' 등이 있음.

다) 비교방식이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라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실증적인 교환측면'에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의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임대료)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임대사례비교법)',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증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 등이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수익방식이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수요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수익환원법',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수익분석법' 등이 있음.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토지와 건물을 개별로 감정평가하였음.

나) 본건 토지가액은 공시지가기준법으로 가액을 산출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음.

6. 그 밖의 사항

가. 기호1,2)지상에는 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하는 바 평가목적상 감정평가외 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토지가액의 산출근거

1.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비교 및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비교표준지의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선정기준

①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② 실제 이용상황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③ 주위환경 등이 같거나 유사할 것.
④ 당해 또는 인접 시·군·구 안의 인근지역에 위치하며, 지리적으로 가능한 가까이 있을 것.

2) 비교표준지 선정

상기 선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아래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함.

(공시기준일 : 2024. 01. 01)

기호	소재지 (김해시)	지목	면적 (㎡)	이용 상황	용도지역	접면 도로	형 상 지 세	공시지가 (원/㎡)
A	생림면 마사리 1471- 4	답	2,244	전	농림지역	세로 (가)	세장형 평 지	72,500
B	생림면 마사리 1513- 1	답	1,133	전	계획관리	세로 (불)	사다리 평 지	106,8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다. 시점수정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5조에 의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음.

1) 지가변동률

소재지	용도지역	산정기간	변동률(%)	비 고
경상남도 김해시	농림지역	2024.01.01 ~ 2024.11.23	0.445 (1.00445)	2024.01.01 ~ 2024.09.30 : 0.385 2024.09.01 ~ 2024.09.30 : 0.033 (1+0.00385)*(1+0.00033*54/30) ≒ 1.00445
	계획관리	2024.01.01 ~ 2024.11.23	2.683 (1.02683)	2024.01.01 ~ 2024.09.30 : 2.291 2024.09.01 ~ 2024.09.30 : 0.213 (1+0.02291)*(1+0.00213*54/30) ≒ 1.02683

※ 2024년 10월 이후의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연장 적용하였음.

라. 지역요인 비교

본건은 비교표준지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마. 개별요인 비교

1) 개별요인 비교항목

[농경지대]

조 건	개 별 요 인 항 목	
	항 목	세 부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융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개별요인 비교치

구 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기호(1) /비교표준지(A)	-	1.03	1.00	1.00	1.00	1.00	1.030
기호(2) /비교표준지(A)	-	1.00	1.00	1.00	1.00	1.00	1.000
기호(3) /비교표준지(B)	-	0.98	1.00	1.00	1.00	1.00	0.980
결정의견							
기호(1) 비교표준지(A)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 기호(2) 비교표준지(A) 대비 제반 개별요인에서 동일함. 기호(3) 비교표준지(B)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열세함.							

바. 그 밖의 요인 보정

1)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그 밖의 요인 보정이란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지역요인, 개별요인의 비교 외에 인근의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선례등을 참작하여 보정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토정30241- 36538,1991.12.28), 대법원판례(1993.09.10 선고 92 누16300, 1998.07.10 선고 98두6067, 2004.05.14 선고 2003다38207) 등의 취지에 따라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 내 유사지역의 감정평가선례, 거래사례와 균형을 유지하고, 인근지역의 지가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기 위하여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이 필요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인근 유사토지의 감정평가선례

(출처 : 감정평가협회 감정평가정보 및 감정평가서사본)

기호	소재지 (김해시)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감정평가 목적	기준시점
#1	생림면 마사리 1833	답	3,434.6	농림지역 (답)	137,000	경매	2024.11.04
#2	생림면 마사리 1471- 4	답	2,244	농림지역 (전)	150,000	경매	2023.07.27
#3	생림면 마사리 556	전	38 /76	계획관리 (전)	177,000	경매	2023.01.26
#4	생림면 마사리 1556	답	38 /76	계획관리 (답)	190,000	담보	2021.05.26
#5	생림면 마사리 1513- 3	답	1,637	계획관리 (답)	180,000	경매	2023.07.27

3)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a	생림면 마사리 1***- *	답	4,257.1	농림지역 (답)	148,000	2021.03.10
#b	생림면 마사리 1***- *	답	2,060.4	농림지역 (답)	160,163	2020.05.30
#c	생림면 마사리 1***	답	850	계획관리 (답)	158,823	2022.03.12
#d	생림면 마사리 1***- *	답	140	계획관리 (답)	175,000	2020.11.1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비교사례를 기준으로한 격차율 산정

① 격차율 산정 기본산식

$$\text{그 밖의 요인 보정치} = \frac{\text{사례기준 표준지의 가격}}{\text{표준지공시지가 기준시점 가격}}$$

$$= \frac{\text{사례단가}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비교} \times \text{개별요인비교}}{\text{표준지공시지가} \times \text{시점수정}}$$

② 비교사례의 선택 및 격차율 산정

적용사례	기호 #1, #3
적용사례 선정의견	상기 인근 감정평가선례중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를 선정하였음.

③ 비교사례 시점수정치

적용 사례	시점수정 기간			시점수정치	비고
#1	2024.11.07	~	2024.11.23	1.00022	김해시 농림지역
#3	2023.01.26	~	2024.11.23	1.03735	김해시 계획관리

④ 지역요인 비교

비교 공시지가 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⑤ 개별요인 비교

구 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비교표준지(A) /적용사례(#1)	-	1.10	1.00	1.00	1.00	1.00	1.100
비교표준지(B) /적용사례(#3)	-	1.03	1.00	1.00	1.00	1.00	1.030

결정의견
비교표준지(A) 적용사례(#1)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비교표준지(B) 적용사례(#3) 대비 접근조건(교통의 편부 등)에서 우세함..

⑥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 비교표준지(A)와 적용사례(#1)의 비교

구 분	가 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가격	격 차 율
적용사례기준 표준지가격	137,000	1.00022	1.000	1.100	150,733	2.070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72,500	1.00445	1.000	1.000	72,823	

ⓑ 비교표준지(B)와 적용사례(#3)의 비교

구 분	가 격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가격	격 차 율
적용사례기준 표준지가격	177,000	1.03735	1.000	1.030	189,119	1.725
기준시점 표준지가격	106,800	1.02683	1.000	1.000	109,66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수준

인근 유사 토지	기호1,2) 인근 세로변 농경지 @140,000원/㎡~@160,000원/㎡, 기호3) 인근 농경지 @180,000원/㎡~@200,000원/㎡ 내외 수준임.

6) 인근 유사부동산의 경매 통계 분석

(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

구 분	경상남도 김해시		비 고
	낙찰가율(%)	낙찰률(%)	
토지	53.51	9.89	최근 1년 평균 (2023.12 ~ 2024.11)
답	53.14	12.03	

7) 그 밖의 요인보정치의 결정

인근지역 내 대상 토지와 유사한 부동산의 정상적인 지가수준을 고려하고, 인근지역 내 최근 감정평가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보정치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비교표준지	용도지역	그 밖의 요인 보정치
A	농림지역	2.070
B	계획관리	1.73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

1) 토지단가 산정

기 호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72,500	1.00445	1.000	1.030	2.070	155,265	155,000
2	72,500	1.00445	1.000	1.000	2.070	150,743	151,000
3	106,800	1.02683	1.000	0.960	1.730	182,132	182,000

2)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원/㎡)	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155,000	3,366	521,730,000	-
2	151,000	2,244	338,844,000	-
3	182,000	1,637	297,934,000	-
합계			1,158,508,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산출개요

감정평가대상 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였음.

나. 거래사례의 선정

감정평가대상 부동산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위치적 유사성이 있고, 용도지역 이용상황 및 규모, , 형상 등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로서, 거래사정이 정상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다음의 거래사례중 #a, #c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지목	면적 (㎡)	용도지역 (이용상황)	토지단가 (원/㎡)	거래시점
#a	생림면 마사리 1***- *	답	4,257.1	농림지역 (답)	148,000	2021.03.10
#c	생림면 마사리 1***	답	850	계획관리 (답)	158,823	2022.03.12

다. 사정보정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라. 시점수정

적용 사례	시점수정 기간	시점수정치	비고
#a	2021.03.10 ~ 2024.11.23	1.03553	김해시 농림지역
#c	2022.03.12 ~ 2024.11.23	1.06005	김해시 계획관리

마. 지역요인 비교

본건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대등함.(1.000)

바. 개별요인 비교

구 분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기호(1) /거래사례#a	-	1.03	1.00	1.00	1.00	1.00	1.030
기호(2) /거래사례#a	-	1.00	1.00	1.00	1.00	1.00	1.000
기호(3) /거래사례#c	-	1.05	1.00	1.02	1.00	1.00	1.071

결정의견
기호(1) 거래사례#a 대비 접근조건(농로의 상태 등)에서 우세함함. 기호(2) 거래사례#a 대비 제반 개별요인에서 대등함. 기호(3) 거래사례#c 대비 접근조건(취락과의 접근성 등) 및 획지조건(형상 등)에서 우세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사.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토지단가 산정

기 호	사례가격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적용단가 (원/㎡)
1	148,000	1.000	1.03553	1.000	1.030	157,856	158,000
2	148,000	1.000	1.03553	1.000	1.000	153,258	153,000
3	158,823	1.000	1.06005	1.000	1.071	180,313	180,000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 호	적용단가(원/㎡)	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158,000	3,366	531,828,000	-
2	153,000	2,244	343,332,000	-
3	180,000	1,637	294,660,000	-
합계			1,169,820,000	

3. 토지가액의 결정

가. 각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 및 결정의견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 고
토지	1,158,508,000	1,169,820,000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에의한 시산가액 및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경기동향, 감정평가선례, 감정평가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바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나. 토지가액의 결정

기 호	적용단가(원/㎡)	면적(㎡)	시산가액(원)	비 고
1	155,000	3,366	521,730,000	-
2	151,000	2,244	338,844,000	-
3	182,000	1,637	297,934,000	-
합계			1,158,508,000	

토지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비고
1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71-3	답	농림지역	3,366	3,366	155,000	521,730,000	
2	"	1471-4	답	농림지역	2,244	2,244	151,000	338,844,000	
3	"	1513-3	답	계획관리지역	1,637	1,637	182,000	297,934,000	
	합 계							**₩1,158,508,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소재 "독산마을회관" 동측[기호(1,2)] 및 남서측[기호3)]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농경지 및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제반 대중교통 상황은 보통임.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2)공히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세장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기호3)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농경지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남서측 및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각각 접함.
기호2)남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 내외의 도로와 접함.
기호3)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하여 통행가능함.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2)농림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업진흥구역<농지법>,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임.
기호3)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제한지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공장설립제한지역(2016-11-28)<수도법>임.

토지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기호1,2)지상에는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소유자 미상의 비닐하우스 2동이 소재함.

(7) 공부와의 차이

없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 미상임.
기 타 : 없음.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71-3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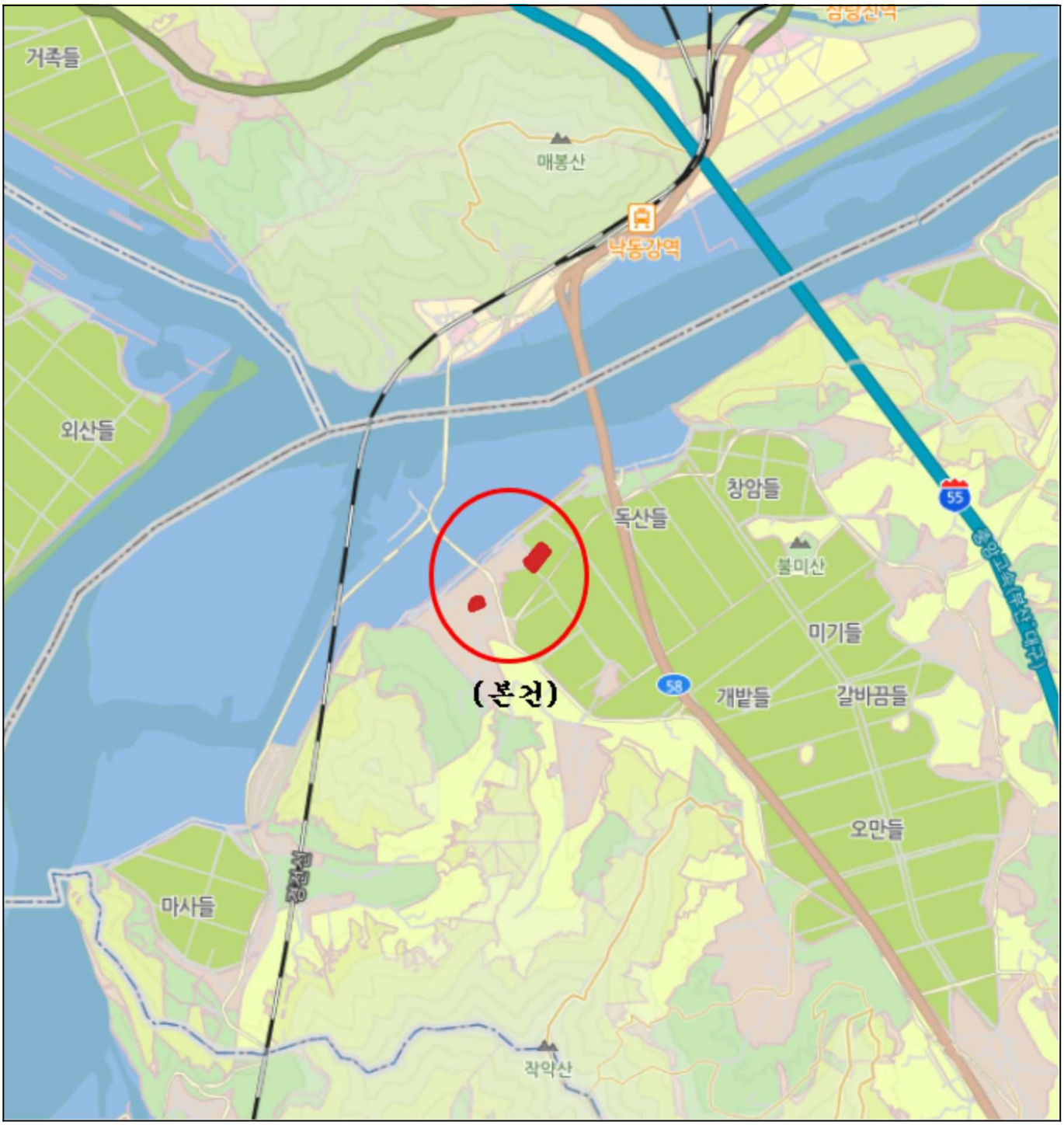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마사리 1471-3外

지 적 도

S : NON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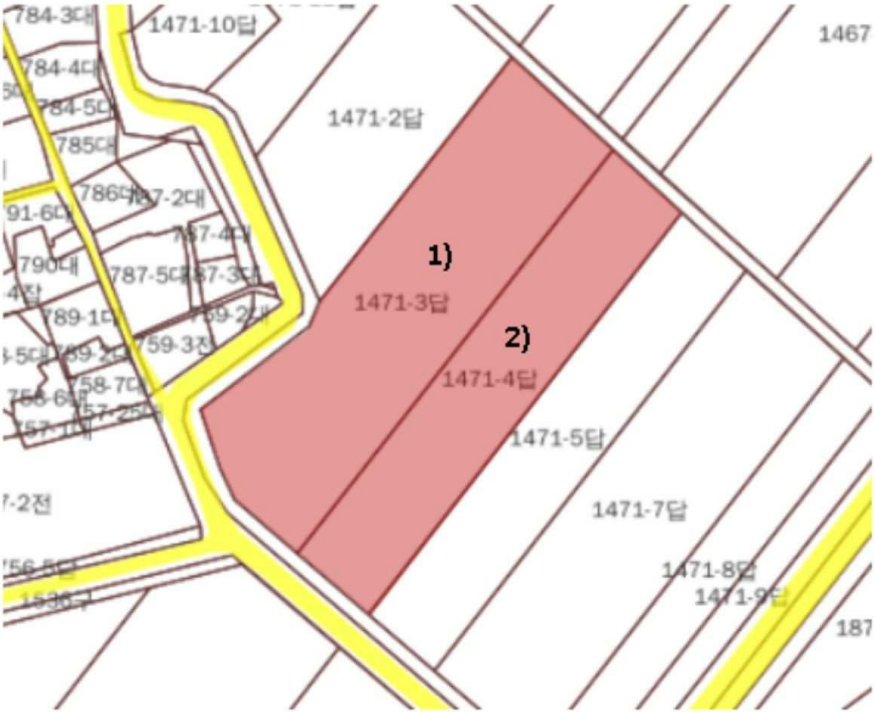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표시한 개략적인 개황도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 적 도

S : NON SC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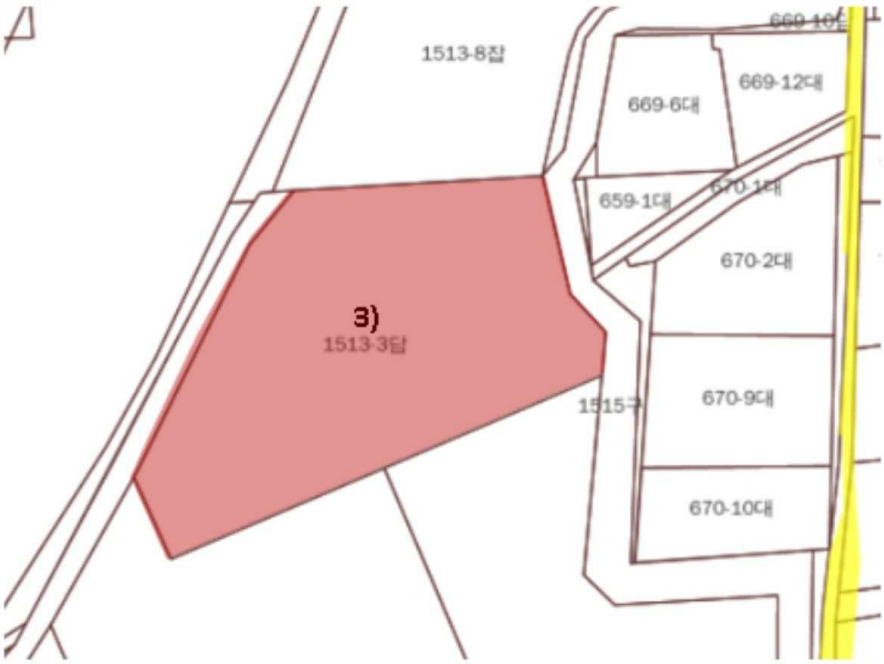

본 도면은 현장조사에 의해 표시한 개략적인 개황도로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1,2)

1)

2)

2)

3)

3)

3)

1)

2)